

윤리규범

케이엔솔 주식회사

목 차

장	절	조	내 용	쪽
1			총 칙	1
		1	목적	1
		2	적용범위	1
		3	윤리규범의 운영	1
2			고객에 대한 책임	1
		1	고객감동	1
		2	고객가치 제고	2
3			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	2
		1	국내외 법규준수	2
		2	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	2
4			임직원에 대한 책임	3
		1	임직원 존중	3
		2	공정한 대우	3
		3	인재육성	3
		4	안전한 작업 환경	3
5			임직원의 기본윤리	4
		1	기본윤리	4
		2	사명의 완수	4
		3	공정한 직무수행	4
		4	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	5
		5	직장내 성희롱 방지	5
		6	회사 자산의 보호	5
		7	내부 정보의 활용	5

장	절	조	내 용	쪽
8		8	근로환경 및 안전관리	6
		9	정치활동	6
		1	부칙	6
		1	시행시기	6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목 적]

본 윤리규범은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 범위]

- 본 윤리규범은 국내 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,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.
-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 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.

제 3 조 [윤리규범의 운영]

- 규정 및 법률 준수 등을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는 경영지원 실장으로 한다.
-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윤리규범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- 윤리 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윤리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심의, 조사의뢰, 징계 업무 등은 경영지원 실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
- 인사위원회는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의 신분 비밀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에 따른다.
-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을 경영지원 실장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

제 1 조 [고객감동]

-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,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-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,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-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2 조 [고객가치 제고]

-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,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.
-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,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.

제 3 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

제 1 조 [국내외 법규준수]

-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,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.
-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.
-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.

제 2 조 [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]

- 생산성 향상, 고용창출, 성실한 조세의 납부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.
-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,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
제 4 장 임직원 에 대한 책임

제 1 조 [임직원 존중]

-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
-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.

제 2 조 [공정한 대우]

-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,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.

- 임직원의 성별, 학력, 출신지역,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
제 3 조 [인재 육성]

-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-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,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제 4 조 [안전한 작업환경]

-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.

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
제 1 조 [기본윤리]

-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 자세를 견지한다.
-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개발에 전력을 다한다.
- 상하,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,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.
-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

않는다.

-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.

제 2 조 [사명의 완수]

- 임직원은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,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.
- 이중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.

제 3 조 [공정한 직무 수행]

-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으며,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의 제공 및 수취를 금한다.
-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업무 수행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4 조 [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]

-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한다.
-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,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.

제 5 조 [직장내 성희롱 방지]

-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,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,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.

제 6 조 [회사 자산의 보호]

-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, 절대 외부로 유출 시키지 않는다.
-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
제 7 조 [내부 정보의 활용]

-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,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.
- 임직원의 기업질서 위반 활동에 대한 내부보고 행위자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, 누설한 임직원은 징계처리의 대상이 된다.

제 8 조 [근로환경 및 안전관리]

-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제 9 조 [정치활동]

-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, 임직원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조직, 인력,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
제 8 장 부 칙

제 1 조 [시행시기]

- 본 윤리규범은 2014년 10월 8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.